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 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 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일부 개정, 2010. 7. 1. 시행)됨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 신설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건 10,000원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1건 5,000원

4. 참고사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같은법 제53조
- 「지방자치법」 제137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 배출 시설 신고 및 허가 업무가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 시로 이 관되면서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별표1) 중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 10,000원),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 5,000원)을 신설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로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및 허가 시 시군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